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41 2019년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다. 상정결과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9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12월 17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 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 용자에 대한 시민청(市民廳) 대관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9. 25. ~ 10. 15.)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해 시민청 대관료를 20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 것을 2020년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2018년 12월 20일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생존력 제고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저감을 목표로 추진하였음.
- 제286회 임시회 당시 서울시의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예산담당관-2507, 2019.2.21.)'에 따라 ① 공 공시설 결제시스템 개선 및 사용자 확대 등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붐업, ② 제로페이의 성공적 조기안착을 위해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자 사용료 할인을 통해 제로페이 사용자를 확대하고자 총 18건의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공공시설 총 160개소에서 전체 결제건수 중 제로페이 할인건은 4.6%, 전체 결제금액에서 제로페이 할인금액은 1.6% 차지하였음.

<서울시 공공시설별 제로페이 할인 실적 현황(2019년 9월말 기준)>

(단위: 건, 원)

전체 결제 건수	전체 결제 금액	제로페이 할인 건수 / 비율	제로페이 할인 금액 / 비율
3,134,347	37,733,774,758	143,734 / 4.6%	615,218,082 / 1.6%

○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예산담당관 -2507, 2019.2.21.)'에서 제로페이 감면은 사용경험을 통한 이용자 확산 유인정책인 점, 수입감소분 보전 등 재정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19년 말까지 적용하되 필요시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여러 상임위에서 제로페이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약 6개월 정도의 시행기간만으로 충분한 제로페이 가입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감면기간을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조례 개정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감면기한 확장설정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음.

○ 서울시정에 대한 여론조사(1차) 결과('19.5월)에 따르면 제로페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91%였으나, 제로페이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의향 있음'이 53.5%, '의향 없음'이 44.4%였음.

<제로페이 인지도/이용의향>



<서울시정에 대한 여론조사(1차), 2019.5.>

- 2019년 1월의 제로페이-서울 인식조사(2차) 결과에 따르면 제로 페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결제방식 보다 복잡하고 불편해서(37.3%)'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체크 카드 대비 할인 및 적립 혜택 부족(14.8%)', '다른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대비 할인 및 적립 혜택 부족(5.7%)', '사용가능 가맹점 적음(5.7%)', 'QR코드 보안성 취약(4.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8년 11월에 실시한 1차 조사결과와도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음.
-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했으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도 21.3%에 이르렀고, 이들 부정적 응답자는 그 이유로 '가입 회원이 적어서', '이용방법이 복잡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기존 카드가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많아서', '다양한 혜택 부족' 등을 들었음.

<제로페이 소상공인 도움 정도에 대한 결과>

			그에 네트	- 4 /
				[n=1,000, 단위: %]
모름/ 5 15.7%		63.0% _{ESEB}	18년 12월(1차) 19	년 01월(2차)
21.3% 도움되지 않을 것	제로페이 - 서울 소상공인	^{68.0} 63.0		
	도움정도		21.8 21.3	_{10.1} 15.7
		도움될것	도움되지 않을 것	모름/무응답

<제로페이-서울 인식조사 결과보고서(2차). 2019.1.>

○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부담 감소 및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중간매개자 수익 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출시 1년이 지났음에도 신용·체크·선불·직불카드 등 전체 결제시장 (119조112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불과하며(아시 아경제, 2019.12.5.),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하여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아닌 서울시에 서 운영하는 시설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 감면으로 인한 손실액을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시민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제로페이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이용의사가 없는 바, 그 사유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가입자 입장에서의 결제 편의성 개선, 자발적 가입 유도, 실질적 혜택 증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도입한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시민청 대관을 위해 제로페이를 이용한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음을 볼 수 있으나, 같은 기간 대관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을 보면 제로페이도입이 대관율을 높이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시민청 5월 ~ 10월 제로페이 운영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5월		6	6월		7월		8월		9월		10월	
十世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결제(A)	241	43,767	46	10,256	38	5,370	44	7,255	49	8,839	24	6,522	40	5,525	
제로페이(B)	33	2,863	3	100	3	300	4	286	8	938	5	436	10	802	
이용률(%)	13.7	6.5	6.5	0.1	7.9	5.6	9.1	3.9	16.3	10.6	20.8	6.7	25.0	14.5	
할 인 금 액		1,175		43		129		70		402		187		344	

 $*6.5\%(5월) \rightarrow 7.9\%(6월) \rightarrow 9.1\%(7월) \rightarrow 16.3\%(8월) \rightarrow 20.8\%(9월) \rightarrow 25.0\%(10월)$

<' 18년과 ' 19년 시민청 5월 ~ 10월 대관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7	셰	5	<u>월</u>	6)월	7	월	8	월	9	월	10)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년	285	44,115	59	8,417	52	11,361	58	6,961	45	3,613	27	3,304	44	10,459
2019년	241	43,767	46	10,256	38	5,370	44	7,255	49	8,839	24	6,522	40	5,525

○ 한편 시민청은 개인적인 수요보다는 단체(법인 등)의 워크숍 등 행사진행을 위한 수요가 많으며 이에 대한 증빙은 전통적인 세금계산 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법인이 제로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용 앱(제로페이 비즈)을 설치하고 회계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조치(비용 발생)를 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개인이 제로페이 사용시 주어지는 소득공제와 같은 혜택이 법인에게 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 제로페이 이용확대에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법인을 위한 혜택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결론적으로 시민청의 제로페이로 인한 할인은 약 120만원(6개월) 에 불과하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제로페이 정책과 함 께 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41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시민청(市民聽) 대관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9, 25, ~ 10, 15,)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04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 제7104호, 2019. 5. 2.>	부칙 < 제7104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10 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u>2019년 12월</u> <u>31일</u>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u>2020</u> 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간편결제 시스템 결제 할인을 부칙 제2조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함에 따라 세외수입 (대관료 수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감면손실액 산출 = $^{'}$ 19년 제로페이 이용료 1달 평균 감면액 \times 12개월

(단위 : 천원)

구 분	'19. 5월 [~] 9월 제로페이 할인액	1달 평균 할인액	'20년 할인 예상액	비고
금 액	830	166	1,992	대관료는 '19년과 동일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박 근 호 (02-2133-6416)